

이 보도자료는 2023. 6. 12.(월)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

수원지검 전문공보관 박광현

전화 031-5182-4290 / 팩스 031-5182-4555

보도자료
2023. 6. 12.(월)

제목

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 사용한 국내 최대기업 前 임원 등 7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●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·산업기술범죄수사부(부장검사 박진성)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A회사*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,

* 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

- A회사의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인 최고 전문가가 중국 등에서 거액을 투자 받아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(甲·乙회사)를 설립하고 A회사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인력 약 200여 명을 고용한 사실,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에 A회사의 공장을 본따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실을 밝혀내어, 위 범행을 주도한 甲회사의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적극 가담한 甲회사 前 직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
●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국정원 산업기밀 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,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반도체 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

I 사건관계인

- 피고인(※ 상세 피고인별 혐의사실 요지는 별첨 참조)
 - ㄱ○○[65세, 구속, 前 A회사 반도체 분야 상무, 前 B회사(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2위) 부사장]
※ 現 싱가포르 업체 甲회사(현재 중국 소재) 및 중국과의 합작업체 乙회사 대표
 - ㄴ○○ 등 6명[공범, 불구속]
- 피해자
 - A회사(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위)

II 공소사실의 요지

- '18. 8.~'19.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·판매업체 C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 시안(西安)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A회사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BED*, 공정배치도**를 부정사용하고, A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부정 취득 및 부정 사용 [산업기술보호법위반, 부정 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]
 - * 반도체 공장 BED(Basic Engineering Data) : 반도체 제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'클린룸'을 불순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환경 조건
 - ** 공정배치도 :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,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

III 수사 경과

- '19. 8. 대검 첩보(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첩보) 접수
 - ※ 피의자 ㄱ○○ 등 장기간 중국 체류로 인해 수사중지
- '23. 2.~4. 피의자 ㄱ○○ 입국, 피의자들 휴대폰 등 압수, 관련자들 조사
- '23. 5. 25. 피의자 ㄱ○○ 구속
- '23. 6. 12. 피의자 ㄱ○○ 구속 기소 / 피의자 ㄴ○○ 등 공범 6명 불구속 기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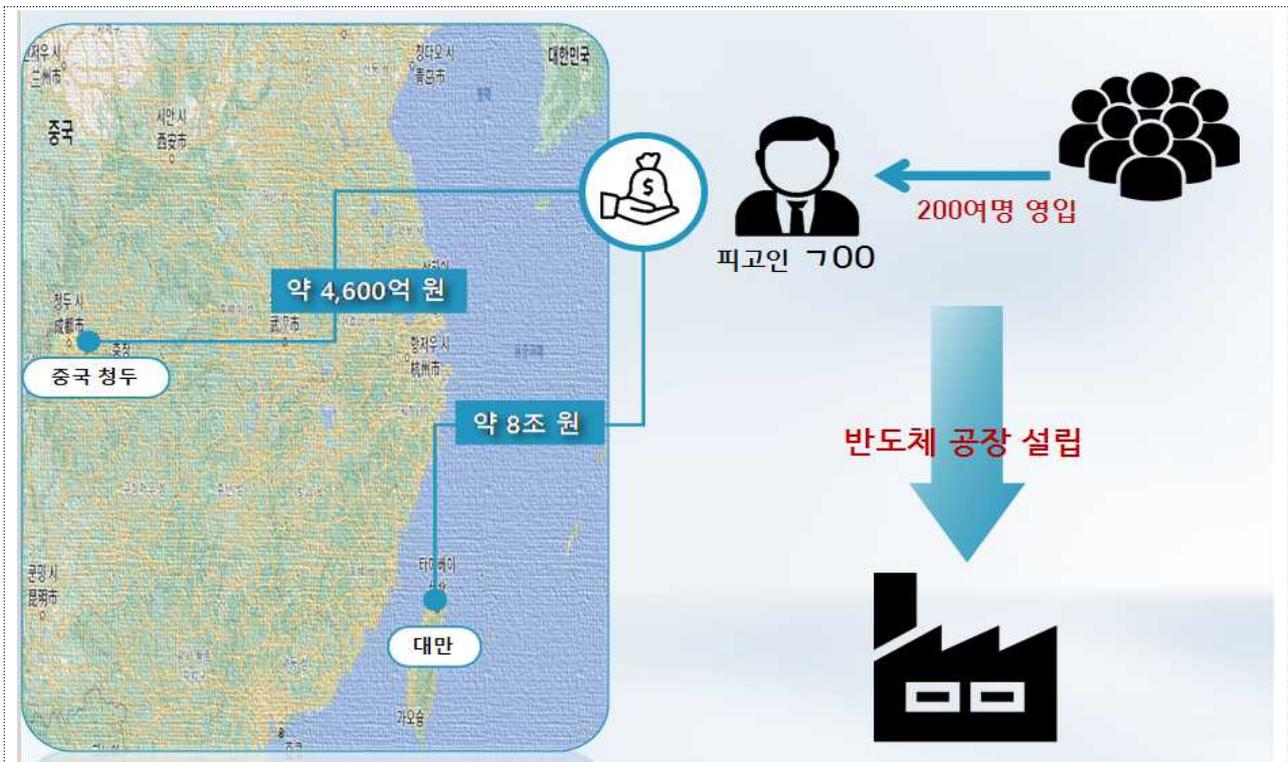
IV

수사 결과 및 의의

1. 국내 반도체 분야 권위자가 저지른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행 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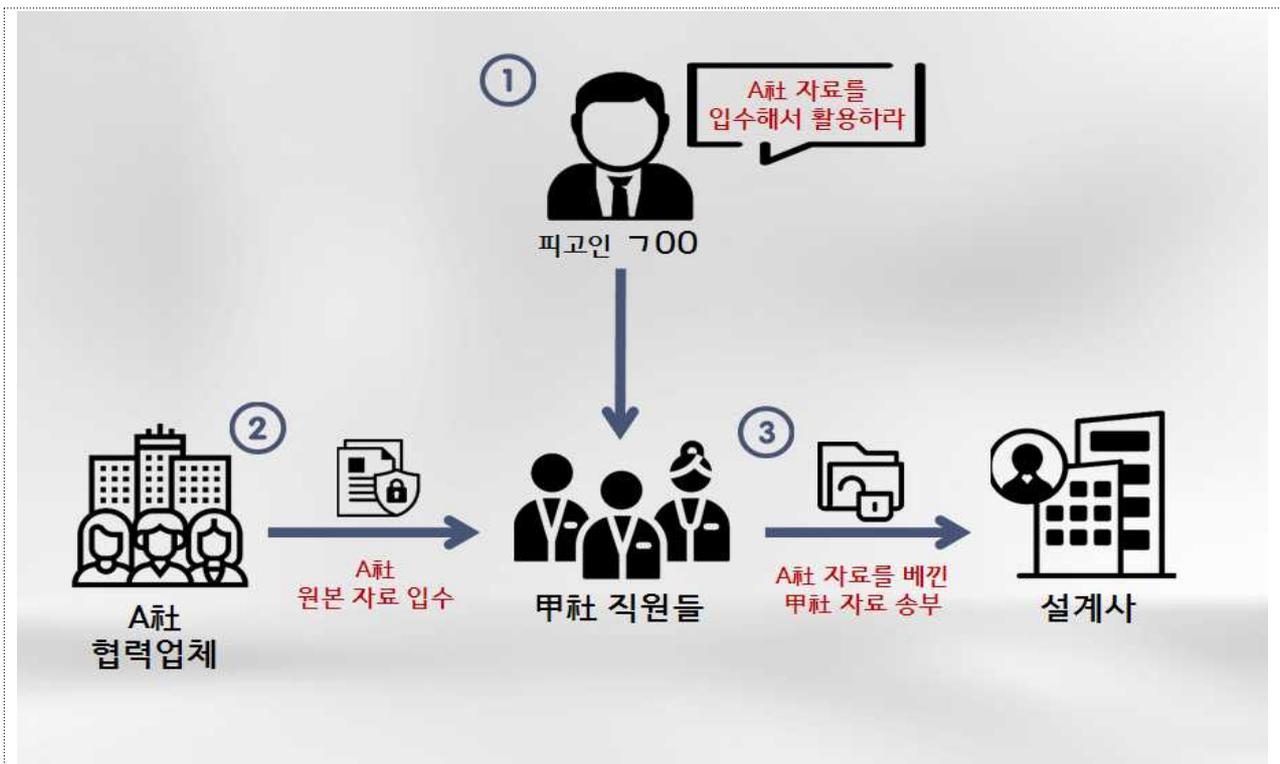
- 피고인 ㄱ○○은 A회사에서 18년간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한 후, B회사에서 10년간 부사장 등으로 근무한 자타공인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
- 피고인 ㄱ○○은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얻은 반도체 제조 분야 전문성 및 권위를 이용하여 중국 및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, 중국·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설립
 - 중국 청두(成都)시 자본(약 4,600억원)으로 중국 업체 乙회사를 설립하고, 대만 C회사의 자본(약 8조원 투자 약정)으로 싱가포르 업체 甲회사를 설립한 후, A회사와 B회사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 연봉으로 영입
 - A회사 중국 시안(西安) 반도체 공장에서 불과 1.5km 떨어진 거리에 위 공장을 본따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A회사의 반도체 기술을 부정 취득·무단 사용

< 범행 배경 >



- 피고인 ㄱ○○은 반도체 공장 설계 과정에서 甲회사 임직원들에게 A회사의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고, 甲회사 임직원들(공범들)은 위 지시에 따라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부정 취득 후 무단 사용함으로써 본건 범행에 적극 가담

< 범행 구조도 >



2. 최대 수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반도체 국가핵심기술·영업비밀 침해

- 부정 유출·사용된 A회사 반도체 공장의 BED, 공정배치도, 설계도면은 최적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A회사에서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 및 연구개발,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얻은 자료로서, 최소 약 3,000억 원, 최대 수조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
- 본건 범행으로 인해 A회사에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, 甲회사는 위 금액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익 취득

< A회사 추정 피해액 >

최소 124억 원

BED 기술 개발 비용

최소 1,360억 원

최적의 공정배치도
도출 비용

최소 1,428억 원

설계도면 작성 비용

최소 3,000억 원 피해 발생

- BED와 공정배치도는 '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의 공정 관련 기술'로서 관련 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

3.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니라, 반도체 공장 자체를 복제하려는 시도 엄단

- 피고인 100은 A회사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중국에 복제하여 건설함으로써 중국 내 반도체 제조·양산을 시도

※ 기존의 개별적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과는 범행 규모, 피해 정도의 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함

- 중국·대만 자본으로 A회사의 반도체 공장이 중국에 그대로 복제되어 동일·유사한 품질의 반도체 제품이 대량 생산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우려

- 이는 반도체 제조의 시스템·생산 환경 등 효율성·수율[收率, 완성된 양품(良品)의 비율]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한 것으로서, 날로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우리의 경제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

V

향후 계획

-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6.5%(’22년 기준)에 달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, 국가의 안보자산이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임
 -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지난 30년간의 연구개발 및 시행착오를 토대로 축적한 뛰어난 기술력 덕분임
 - 이러한 기술력 및 제조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되면 오랜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물거품이 되고, 국내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
- 수원지검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,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임 

[별첨 :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]

순번	피고인	직책	공소사실[죄명]	처분
1	ㄱ○○	甲회사 대표 (前 A회사 상무, B회사 부사장)	공모하여, '18.~'19.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이자 A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, 공정 배치도,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·사용 [산업기술보호법위반, 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]	'23. 6. 12. 구속 기소
2	ㄴ○○	前 甲회사 팀장 (前 A회사 직원)	상동	'23. 6. 12. 불구속 기소
3	ㄷ○○	前 甲회사 팀장 (前 D회사 직원)	공모하여, '18.~'19.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이자 A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를 부정사용 [산업기술보호법위반, 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]	상동
4	ㄹ○○	前 甲회사 팀장 (前 A회사 직원)	공모하여, '18.~'19.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이자 A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공정배치도를 부정사용 [산업기술보호법위반, 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]	상동
5	ㅁ○○	前 甲회사 직원 (前 A회사 직원)	공모하여, '18.~'19.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A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부정취득·사용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]	상동
6	ㅂ○○	甲회사 직원 (前 D회사 직원)	공모하여, '18.~'19. 중국 시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A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부정사용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]	상동
7	ㅅ○○	E회사 (A회사 시안 반도체 공장 감리회사) 직원	'18. 9. ㅁ○○에게 A회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누설 [부정경쟁방지법위반(영업비밀국외누설등)]	상동